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- **효력발생일** : 2016. 6. 3
- **정정 사유**
 - (1) Ce클래스 추가
 - (2) 이익 분배 방법 변경 : 평가이익 유보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
-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<u>2016. 6. 3. : Ce클래스 신설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12.31. 기준	<u>2016. 4. 30. 기준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Ce클래스 추가	<u>Ce클래스 :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Ce클래스 추가	<u>Ce클래스 수수료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Ce클래스 추가	<u>Ce클래스 보수 및 비용 기재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u>삭제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

	<p>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	<p>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<u>※ "2016년 6월 3일"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
--	---	--
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⑤ 투자설명서 변경(단,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,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 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</u></p>



		<u>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)</u>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

